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·권인숙·서삼석

박 정・임종성・안호영

박찬대・정춘숙・유동수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, 영업을 양수한 자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. 반면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,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새로운 영업자(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종전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	제34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
계)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	계)
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	
제32조제1항 각 호(제10호는 제	
외한다)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	
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	
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	
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	
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	
법인에 승계되며, 행정제재처분	
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	
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	
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	
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<u><단</u>	<u>다</u>
<u>서 신설></u>	만, 새로운 영업자(상속에 의한
	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가 영업
	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
	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
	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	<u>하다.</u>